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50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 장종태·김 윤·황정아

조인철 • 박지혜 • 강준현

박희승 • 박용갑 • 서영석

안태준 • 이재강 • 장철민

박정현 • 임미애 • 이기헌

민형배·한창민·김남희

박해철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노인의 소득,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'근로'가 아닌 '복지수혜'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

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	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		
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	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		
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(생 략)	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은		
	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		
	금 이상으로 한다.		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